



정책동향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2000년 병원병상 확충 및 기능개선을 재정용자지원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6일 일부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농특자금 68.4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그 세부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 재원별 융자규모 및 조건

- 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68.4억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함.

- 대상사업 및 융자기준

- 병상 신·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건축법상 300평 이상(농어촌 지역에서 부족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자에 한하여 2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220만원을 지원함.
- 의료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그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함.

－ 용자제의 대상

- 사업이 기완료되었거나, 1995년 이후 재정용자 지원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매·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 등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지원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지사가 2000년 7월 10일부터 2000년 8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재정용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실현가능성, 의료기관 운영상태, 정부용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면 8월중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병원을 선정하고, 농협을 통하여 용자금 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임.

처방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기구 가동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전면 실시 초기에 처방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의약관련단체로 구성된 『처방약품 수급조절 대책 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부 제약업소 및 의약품 도매업소가 기 판매된 처방약품이 일정 기간 경과후 반품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국의 처방약품 주문을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일시적 가수요로 판단, 자체생산 및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어 동네약국 등에서 의약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참고로 2000년 7월 25일 현재 다빈도 처방약품을 준비완료한 약국은 5,538개 소로 준비약국(13,934개소)의 40%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200종 이상 약품 확보 약국까지 포함할 경우 약 84%로 조사되었다.

□ 대책기구의 역할

- －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초기에 약국에서 준비하는 다빈도 처방약품은 가수요

가 아닌 실제 수요량이므로, 제약회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에 비하여 공급량을 대폭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 수요량 예측 착오에 따라 반쯤되는 처방약품에 대하여는 대책기구에서 새로운 수요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국별 편중보유를 해소하는 한편,
- 의료기관의 재고 의약품 해소방안과 함께 의약품의 신속한 수급 및 약국간 교품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져 처방약품 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대책기구의 구성

- 비상대책기구는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1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의약분업 시행기간 중 수시로 개최하여 처방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임.

국민연금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조정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

□ 지역가입자 등 연금보험료를 7월부터 소득의 4%로 조정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보험료율이 오는 7월부터 현행 3%에서 4%로 1% 상향조정됨.
- 이는 도시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199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연도별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임.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시행초기 3%로 시작하여 현재 9%를 납부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연금보험료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가입자간 보험료율 부담의 형평을 고려한 것임.
- 한편, 도시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은 시행초 60.0%에서 현재는 78.6%로 자동이체 납부율은 29.7%에서 56.0%로 높아져 안정적인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도시지역 확대시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1998년 7월부터 70개 지사에 전화집중처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전화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해 오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작년 말에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국민연금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2월 10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DI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음.
-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고객 서비스 향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업무에 feed-back 시키기 위해 고객만족도를 매년 2회씩 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의 전화응대수준을 평가하는 전화모니터링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음.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는 1998년 하반기 최초평가지 70점이었던 것이 점차 상승하여 1999년 하반기에는 75.8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화응대수준은 최초평가지 75.7점에서 2000년 2/4분기 평가는 79.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해구호물품의 지원체계를 개선

보건복지부는 하절기를 맞아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될 경우 재해구호물품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도 재해 지역에서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구호

물품 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각 시·도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금년도에는 구호물품 지원에 따른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재해발생시 신속한 실태파악 수단 확보

- 재해지역의 이재민구호와 재해구호물품관리시스템에 관한 종합전산망을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재해구호업무를 전산화하고 재해초기 고립지역의 이재민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아마추어무선사 및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함.

－ 재해구호물자의 사전 비축 및 긴급지원

- 시·도 및 시·군·구는 최근 5년간 재해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해구호물품의 종류별 수량을 확보하고, 응급구호물품은 가능한 한 개인용, 세대용으로 세트화하여 재해발생 초기에 긴급 방출하며 대량으로 소요되는 생수, 라면 등은 구입선을 사전에 확보함.
- 일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던 것을 물품의 용도에 따라 재해 단계별로 분류하여 재해 초기에는 모포, 내의, 세면도구 등 응급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재해복구시에는 의류, 일상생활용품, 식기류 등을 지급하며, 재해 복구후에는 가재도구 등을 지급함.

－ 재해구호창고 건립 및 확보

- 구호물품 보관창고 부족으로 대량의 의연품 답지시 재해 현지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행정마비 초래 및 의연품 지급의 지연, 중복, 누락 등이 발생됨에 따라 창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창고를 확보토록 하고, 기존의 304개 창고의 경우에도 협소한 공간을 확대함.
-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재해발생시 대량 기탁되는 의연품을 접수·분류·보관·배분을 위하여 중부권(상습 재해 발생 지역인 경기도 파주 예정)에 대형창고(대지 1만평, 건평 5천평)를 2001년 하절기까지 건립하고, 남부지역에도 금년중 창고 부지를 물색하여 선정 예정이며, 한편, 금년 재해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 대형 물품보관소를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임.
- 대한적십자사도 전국 지사의 15개 창고 이 외 구호물품 보관용 대형창

고 설치를 위해 금년중에 부지를 확보함.

－ 재해구호 전달체계 확립 및 각 기관별 업무 조정

- 보건복지부는 재해구호물품 관리를 총괄 조정하며, 구호물품 부족시 시·도간 조정 및 대한적십자사 및 재해구호협의회를 통하여 추가 지원토록 조치를 강구함.
- 시·도는 시·군·구별 구호물품의 배분상황, 부족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함.
- 시·군·구는 재해구호물자를 직접 접수 배분하되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집행함.
- 대한적십자사는 재해발생시 지역사회 자원봉사대를 동원하여 응급구호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함.
-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기탁물품을 관리하며, 기탁물품 중 식량, 생필품, 담요 등 응급구호물품은 시·군·구와 협의 직접 전달토록 하고, 재해초기 시·군·구 행정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물품 이 외에는 지원시기를 늦추어 추후 적정 수량을 포장하여 전달토록 함.

－ 홍보 계몽 강화

- 구호물품의 지역별 대량 지정기탁으로 인한 중복, 과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연금품 모집시 구호가 용이한 의연금 기탁을 권장하고, 의연금의 기탁을 고수할 경우에는 필요물품을 기탁토록 안내함.
- 재해발생 대비 학교 등 대피소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피해와 희생자를 최소화 함.
- 집단수용시설에 구호품 지급시 이중 수령 자제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 및 수용시설내 자율적 질서유지를 계도함.